

공공저작물 활용 분쟁사례

2015. 12. 18



- 서체 -



서체란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며, 학술적 개념으로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의 문자 세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컨셉트에 기해서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을 의미.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의 저작권보호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서체” 그 자체로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하나, 서체를 표현하기 위한 “서체 파일”的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그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서체 - 저작물로 보호 안됨 >



< 폰트 파일 -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아 보호 >

PC의 Fonts(c:\windows\Fonts)폴더에 저장되는 “.ttf”파일명으로 저장되는 파일.



1. **서체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로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 내지는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2. 서체파일의 소스코드는

① 그것이 비록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바로 실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서체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② 서체파일 제작 프로그램에서 마우스의 조작으로 서체의 모양을 가감하거나 수정하여 좌표값을 지정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연결하여 저장함으로써, 제작자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의 알고리즘(algorithm)에 따라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보통의 프로그램 제작과정과는 다르다 하여도,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작성되어 사람에게 이해될 수 있고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8. 12. 30. 법률 제5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3. 서체파일의 창작성

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서체 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인정(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 서체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서체 파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 등 별도의 절차나 방식을 거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보호됨.
- 서체 파일의 저작권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재산권을 가짐. 따라서, 이용자가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PC에 설치하거나 업로드를 하는 경우 저작자의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서체 파일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재산권 등의 저작권 침해 시 민·형사상 구제 신청 가능. 따라서, 저작권자는 민사상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예방청구, 침해정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고,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음.

< 민사 >

-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사 >

-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 (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 ②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형사 >

- 저작권법 제136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침해자로 지목된 경우의 대처방안 1) 내용증명의 경우

서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자의 법률대리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대개는 서체 파일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을 획득하여 역으로 서체 파일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짐작한 데에서 비롯됨.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결과물의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만들게 되었는지 등을 살펴 대응해야 함. 내용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는 예도 많지만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음



발신 [REDACTED]
수신 :
주 소 : 서울 종로구 북촌로 18(재동 54-5번지)
제 목 : 저작 프로그램 라이선스 보유 확인 협조 요청의 건

1. 귀사의 말이 변형 저작물을 친정으로 기울입니다.

2. 다음 법무법인은 서체 저작권사 [온라인법보통신] (이하 "의뢰인") 이라 할 때 저작물인 [한글PDF서체 프로그램] (이하 "프로그램") 이라 했을 때 사용실태 및 저작권 침해문제에 따른 보호와 관련된 법적·법률적인 권한을 위임 받아 첨부 프로그램 시장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 1 참조]

3.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는 단순히 폴폴표식 없이 창작작품 유통으로 사용 및 복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무단전재, 배포, 복제, 디자인, 면밀, 프로그램개발 등의 작업용도로 사용하면서 접두사 수단(비) 라이선스, 민족, 대수준 부족한 경우 등에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저작권은 형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저작권법 제126조 제1항] 라고, 있는데 대로이사 등의 범위와 함께 범인을 함께 처하는 형사규정 [저작권법 제14조] 이며 범사형으로서 귀사의 경무처벌 저작권자가 저질한 사용자 범자를 조사 하여 사용한 경우 위로급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저작권법 제125조 및 126조 참조]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의뢰인" 과 본 법무법인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귀사는 [별첨자료 2]에서 보도의 "프로그램" 을 E-BOOK 유통 [온라인상의 E-BOOK판권증] 도록, 저작, 출판 등에 포함된 고유의 글꼴에 대해 판권을 EPUB, PDF 파일로 변환 및 할매이상 하여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하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사용하고 있음을 확실하니 귀사는 "프로그램" 의 저작물을 사용할 정도로 권리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달 법무법인에서는 못하지 않은 불시 법률진행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귀사의 피해를 미연에 막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요청 드리오니 확인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6. 상기 "의뢰인" 의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규정에 균형이 맞지 않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별첨자료 3 참조] 귀사의 E-BOOK(PDF)에 사용된 HY폰트 ([별첨자료 2 참조]) 는 "프로그램" 의 "프로그램" 을 실행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만 상정될 수 있는 서체로 E-BOOK (HY폰트) 글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되어있는 PDF에 사용되어 있고 사용중인 E-BOOK은 귀사의 홈페이지에 글씨도 되어있습니다만 귀사의 "의뢰인"과 별도의 사용권 설정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바 달 법무법인에서는 귀사가 "의뢰인" 이 규정한 "프로그램" 의 사용범위를 초과한 영업활용 치밀한 저작권을 고지해 드립니다. [별첨자료 3 참조]

7. 상기 "의뢰인" 을 거쳐법제 [문서체적 표지로 한정] 의 법률 유통그룹으로 HY폰트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나다만 귀사가 사용한 폰트는 해당 이클리에의상 벤들로 제공한 바 있는 서체가 사용되어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8. 이에 달 법무법인에서는 귀사가 살지 가능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중인 PC를 트루타입 폰트 (TTF FONT) 의 사용 충지 소명과 E-BOOK 라이선스 보유현황에 대하여 소명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9. 참고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범위 및 조건을 범위에 관해서 규정 [저작권법 제46조]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사용권 계약서" 상 또는 "사용권" 등에 특정 분야 이용에 대하여 별도로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는 경우 권리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면허상 침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E-BOOK]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부록) 저작권 개념 7-2 참조]

10. 본방지하시더라도 실가 내용은 관련법 제46 조의 저작권 침해자에게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한에 대한 귀사의 입장 표명 및 E-BOOK라이선스에 대해서 3월 이내 구체적인 회신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 ※ 별첨자료
- 34. 저작권사 위원장
- 35. 서체서울 즐거자료
- 36.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서(EULA)



1.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함.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됨.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용되어 확정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이용됨.

따라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정당한 청구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를 무시하면 안되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용해야 함.

2. 조정제도의 이용

저작권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분쟁조정제도는 조정부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신속·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음.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02-2660-0104)에서 해당업무를 담당.

서체 파일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서체 파일 저작권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구매하여 이용해야 함. 특정 서체를 이용하고 싶지만 저작권자의 소재파악이 어렵다면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음.

○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법정허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02-2660-0102)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음.

Q1. 폰트파일로 BI(Brand Identity)나 CI(Corporate Identity)등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폰트 파일 자체를 복제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제작 과정에서 무단으로 폰트파일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며, 폰트파일의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그리고 서체파일을 구매한 경우에도 계약서 또는 사용약관 등에 특정 이용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다면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난 이용행위에 대해 권리자가 제재를 가할 수 있음.

Q2. 외주 제작 시 사용된 서체 파일의 이용책임

ex) A가 포스터 제작업자 B에게 의뢰하여 홍보에 쓰일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B는 저작권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서체파일을 이용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이 경우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B의 서체 파일 무단사용을 몰랐던 A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가? 또 포스터를 회수하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저작물 외주 제작은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저작물을 만들기 때문에, 외주 제작의 결과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작한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만약 B가 특정 글자체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서체파일을 이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저작권 침해 책임은 B에게 있음.

▶ 그러나 A는 Q1.과 같은 이유로 서체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만을 사용한 것이 되므로 서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한 폰트 파일로 만든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Q3. 서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유료구매가 부담될 경우 여러 사이트에서 서체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음. 다만, 무료배포의 경우에도 권리자가 이용허락범위를 제한하였을 경우 그 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용 허락범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무료 이용가능 폰트 >

- 다음(DAUM) 글꼴: 개인 및 기업무료(단, 기업의 BI, CI 및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명시적인 승인 요망)
- 네이버 나눔글꼴에코: 개인 및 기업무료(단, 폰트 파일 자체의 상업적 판매 금지)
- 제주전용폰트: 개인 및 기업 무료(단, 폰트 파일 자체의 상업적 판매 또는 양도금지)
- 문화체육관광부 개발 폰트: 개인 및 기업무료
- KoPub 서체: 개인 및 기업 무료(수정, 변형, 임대 및 재판매 금지)

※ 참고문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2013)

- 초상권 관련 권리처리 가이드라인 -

가. 기관의 입장에서는 세미나·토론 자료를 만들 때에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사진을 첨부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의 자료에 사진이 포함되어 제작됨.

하지만, 기관이 주최한 세미나·토론회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자료집, 브로셔, 팜플렛 등에 첨부하는 경우 강연자 및 참석자의 초상권이 문제되어 해당 자료에 관해 1유형이나 자유이용이 불가능해지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 이에 대하여 어떻게 권리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함.

나. 개방지원사업단 가이드라인 협의내용

-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음(수원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단80889 판결).

- 기관이 행사참여자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경우, 우선 초상의 주체가 촬영에 동의를 하였고 보통 기관은 당해 사진을 행사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형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며, 그것이 특별히 초상의 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록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성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에 1유형이나 자유유형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하지만, 초상권에서 명예훼손이나 상업적 이용가능성은 초상권의 성립요건보다는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하여 모든 기관 자료의 사진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초상의 주체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논의 함.
 즉, 기관의 대표자나 직원, 세미나·토론회 등의 강연자 등은 초상권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1유형이나 자유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고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나 세미나·토론회 등의 소극적 참여자의 경우에는 초상권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하여 1유형이나 자유이용이 가능하도록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함.

1) 권리처리 방법

기관의 대표자나, 직원과 같은 기관 내부의 사람 및 상부기관 참석자, 세미나·토론회 등에서 발제자·강연자, 수상자와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거나 행사에 참여하여 사진이 찍힐 때 이용가능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사진에 대하여는 각 당사자가 초상권 이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고 **1유형 및 자유이용 가능한 것으로 권리처리**.

2) 예시자료

○ 대표자 및 직원

▶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 위원장은 기관의 대표자로, 사행산업통합감동위원회 직원들은 기관의 내부 인으로 초상권 이용의 묵시적 이용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1유형 처리

· 제 목	★ 김성미 위원장 이임식		
· 조회 수	2849	· 글쓴이	관리자
· 첨부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성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2013년 10월 14일 창성동 청사에서 이임식 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2009년 4월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날 이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위원회 직원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받았으며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인 "중독 치유복지"를 전 직원에게 증정하였다.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들은 기관의 내부인으로 초상권 이용의 묵시적 이용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1유형 처리

KOFIN 소식

■ 목록

재단, 임직원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05.12)

이름 : 관리자 날짜 : 14-05-13 17:5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5월 12일 오후 1시부터 두 시간 동안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강정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이 강사로 나서 관련 동영상 시청과 강연을 진행했으며 행사는 참석자 간의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교육에는 재단 임직원 44명이 참석했다.

▶ 기관의 대표자, 국가기관의 장의 경우 초상권 이용의 묵시적 이용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1유형 처리



· 제 목 희망센터 민들레회 방문

· 조회 수 2291 · 글쓴이 관리자 · 등록일 13.02.19

· 첨부 첨부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이 위원장은 2013년 2월 4일 도박 중독자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희망센터 민들레회(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위치)”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로부터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A photograph of a man in a dark suit and tie standing in front of a banner. He is pointing towards the banner with his right hand. The banner features Korean text: “서울에게 희망을 민들레회”, “NCC 사행산업통합감독 The National Gaming Control Co.”, “김성이 위원장”, and “대화”. There is also a large image of a dandelion on the banner. The man is holding a piece of paper in his left hand.

○ 각 기관의 장의 모임, 협약

▶ 중국후안시장,문경시장의 경우 각 기관의 장으로 초상권 이용의 목시적 이용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1유형 처리

제목 중국후안시장방문(10.11)

작성자 홍보전산과@2015.10.12 08:43:32

파일 [DSC_1384.jpg\(567.26 KB\)](#) [DSC_1392.jpg\(572.70 KB\)](#) [DSC_1401.jpg\(651.88 KB\)](#) [DSC_1423.jpg\(562.18 KB\)](#)
[DSC_1426.jpg\(589.76 KB\)](#) [DSC_1441.jpg\(572.54 KB\)](#) [DSC_1443.jpg\(631.69 KB\)](#) [DSC_1459.jpg\(658.05 KB\)](#)
[DSC_1470.jpg\(663.98 K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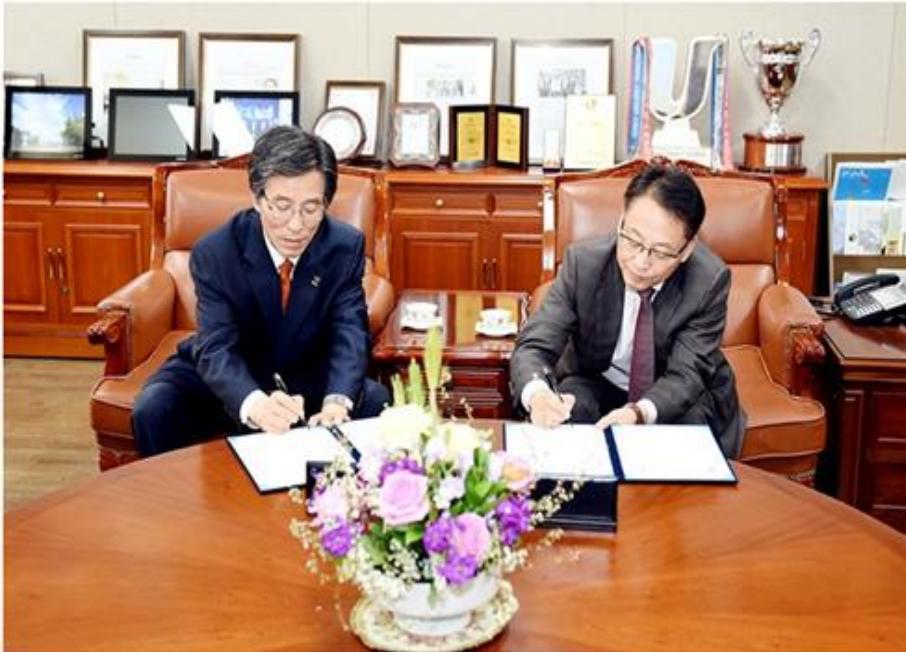


▶ 양 기관 대표자들의 경우 각 기관의 장으로 초상권 이용의 묵시적 이용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1유형 처리

제목 영남대 업무협조 약정체결(4.10)

작성자 총보전산과@2015.04.10 14:57:56

파일 DSC_1111 사도.jpg(560.03 KB) DSC_1089 사도.jpg(410.32 KB) DSC_1096 사도.jpg(593.83 KB) DSC_1123.jpg(480.57 KB)
 DSC_1131.jpg(652.66 KB) DSC_1158.jpg(700.29 KB) DSC_1164.jpg(634.77 KB) DSC_1174.jpg(500.28 KB)
 DSC_1190.jpg(594.31 KB)



○ 발제자·강연자

▶ 강연자, 발제자, 토론자의 경우 사진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이 예상되므로 초상권 이용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1유형가능으로 처리

KOFIH 소식

[목록]

캄보디아 바탐방도 모자보건증진 사업 점검 워크숍 열려(7.1.~7.3.)

이름 : 관리자 날짜 : 14-08-07 18:49



재단은 지난 7월1일부터 3일까지 캄보디아 바탐방도(道) 모자보건증진 사업 계획을 세우기 위한 워크숍을 시엠립 소마데비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출해 상반기 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체결 예정인 '14년도 모자보건증진 프로그램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에는 바탕방도 보건국, 군보건국 사업 관계자와 도병원, 군전원병원, 중앙보건부, WHO사무소, 국립모자보건센터 등 캄보디아 측 보건 관계자와 재단 측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이 2년 차에 들어서면서 지역 사회가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도 보건국 관리·행정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도 보건국의 관리·행정 능력 향상에는 특히 마을보건정보체계(Community based Health Information System)가 한몫 했다.

마을보건정보체계에는 마을 보건요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보건요원은 주민을 만나 모자보건에 대해 설문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정리해 각 보건소에 보고한다.

이 자료는 각 OD(Operational District:보건행정 구역)에 위치한 보건소에서 전산 입력되며, 웹하드에 저장된다. 도 보건국은 이렇게 마을별 모자보건정보를 보유하게 되며, 분기별로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한편 참가자들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활동 예산안을 작성했으며 예산 집행 계획안에는 의료인 교육 등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 발제자·강연자

▶ 강연자, 발제자, 토론자의 경우 사진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이 예상되므로 초상권 이용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1유형가능으로 처리

KOFIH 소식

목록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 세미나(12.4)

작성자 : 관리자 날짜 : 12-12-06 17:28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 세미나(12.4)

- 남북 보건의료의 새로운 지평을 창하여 -

제단은 지난 12월 4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 4층 에메랄드홀에서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기반 구축'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남북한 관계 상황 변화에 대비해, 국내외 북한 전문가를 초청, 북한 보건의료분야 변화를 살펴보고, 한후 남북한 간 보건의료 협력과 국내외 북한 보건의료 지원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요나스 테겐(Dr. Yonas Tegegn)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2006년부터 5,500만불 이상의 기금이 북한 여성과 아동 건강증진 사업에 쓰였는데 이 금액 가운데 지난 7년 동안 한국 정부는 4,640만불을 후원했다"고 한 뒤 "북한에서의 모든 보건 프로젝트들은 WHO와 다른 유엔기관(UNFPA, UNICEF ...)과 NGO들 간 집중과 상호 보완적 방법을 기반으로 잘 협력되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데이비드 옥스퍼드대학교 경제학부 및 국제개발학대학원 교수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 전환이 한국의 통일과 북한의 보건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통일은 북한의 초기 조건 때문에 구소련이나 동유럽의 경제전환 때보다 더 많은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북한 경제 전환과 남한과의 경제통합은 실현 가능하지만 난관이 많은 과정일 것이고 특히 보건 분야에서의 변환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 수상자 · 기증자 등

▶ 수상자의 경우 사진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이 예상되므로 초상권 이용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1유형가능으로 처리

제목 문경오미자대표브랜드 "레디엠" 2012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4.19)

작성자 기획감사팀도관실@2012.04.19 13:22:23

수정자 기획감사팀도관실@2012.04.25 11:26:36

파일 DSC_8387 사진.jpg(281.69 KB)



문경오미자대표브랜드 "레디엠" 2012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4.19)

▶ 도서 기증식의 사진의 경우 기증자의 경우 사진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음이 예상되므로 초상권 이용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1유형가능으로 처리

● 포토갤러리

Home > 열린마당 > 포토갤러리

다우케미컬_도서기증식 2013-11-28 11:54:29 최희경



다우케미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서를 기증해주셨습니다

목록보기

1) 권리처리 방법

▶ 세미나·토론회의 단순 참석자와 기관에 속하지 않은 제3자와 같은 소극적 참여자들이 묵시적인 초상권 이용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초상권 이용 동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사진을 모자이크하거나 삭제하여 1유형 부착 및 자유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권리처리.

2) 예시 자료

▶ 행사의 단순 참석자의 경우 사진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가-초상권침해가능”으로 처리

제목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10.15)

작성자 홍보전산과@ 2015.10.15 11:14:10

파일 DSC_1798.jpg(731.65 KB) DSC_1806.jpg(1.07 MB) DSC_1827.jpg(760.31 KB) DSC_1834.jpg(654.30 KB)
 DSC_1868.jpg(853.14 KB) DSC_1860.jpg(861.95 KB)



▶ 기관 대표자의 방문사진의 경우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 사진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가-초상권침해가능”으로 처리

제목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방문-영순면(4.17)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실 @ 2012.04.17 14:40:21

파일 DSC_8041 사본.jpg(168.98 KB)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방문-영순면(4.17)

제목 장애인종합복지관 행복밥상 나눔행사(7.10)

작성자 홍보전산과 @ 2015.07.10 16:31:50

파일 DSC_3137.jpg(659.36 KB) DSC_3138.jpg(678.45 KB) DSC_3149.jpg(627.41 KB) DSC_3167.jpg(579.17 KB)
 DSC_3133.jpg(898.22 KB) DSC_3131.jpg(704.59 KB)



- ▶ 기관 대표자의 방문사진의 경우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 사진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가-초상권침해가능”으로 처리



▶ 기관 대표자의 방문사진의 경우 사진에 찍힌 사람들이 사진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가-초상권침해가능”으로 처리



▶ 단순 행사사진의 경우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가-초상권침해가능”으로 처리



향후 초상권 관련 문제에 대비하여

- 토론 강연자 및 참석자 초빙 시와 안내 시에 초상 이용 문제를 언급하고 초상권 이용 동의서를 받을 것을 권유.
- 또한, 기관 행사에 다수가 참석할 때는 일일이 초상사용 동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고를 의뢰할 때나 포스터·방명록 상단 등에 기관 홈페이지 및 브로셔, 팜플렛, 세미나·토론회 자료 등에 초상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원치 않는 사람은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안내를 미리 할 것을 권유.

- 초상권이 첨부된 자료에 대하여 권리처리 방향을 정함으로써 획일적인 권리처리가 가능
- 근본적으로는 초상권 이용 동의를 미리 받거나 이용가능성에 대해 미리 안내하도록 하여 향후 사진 및 초상권이 첨부된 자료의 1유형 및 자유이용이 가능해지고, 이용 시 초상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소지를 줄임.

- 공공데이터 분쟁사례 및
개방지원사업 이슈사항 -

공공데이터의 제공 관련 저작권 분쟁 발생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사건번호 2014-002 : 정부발간물

개요

신청인은 영리적 목적(전자책 제작 및 출판)으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발간물에 대한 전자 파일을 제공 요청

거부사유

공공데이터법 제28조 제1항의 1내지 2호의 이용요건(영리적 이용불가) 및 **발간물 제작에 참여한 제3자(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유로 제공을 거부

조정결과

“영리적 이용불가”라는 이용조건은 공공데이터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제3자의 저작권이 관련되어 있다면 피신청인이 그들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를 받은 후 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관련 저작권 분쟁 발생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사건번호 2015-005 : 농촌진흥청 발간물

개요 신청인은 영리적 목적(출판 및 전자책 제작)으로 농촌진흥청의 발간물에 대한 전자파일을 제공 요청

거부사유 피신청인은 2015-005사건의 데이터는 공동저작물이어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어 제공이 어렵고, 2015-006사건의 데이터는 사진,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공 거부

**조정결과**

2015-005사건의 경우 자료 검토 결과 기관이 전자파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제공 불가, 2015-006사건의 경우 사진 및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text)에 대해 “부분 제공”하는 것으로 상호 조정 전 합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관련 저작권 분쟁 발생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사건번호 2015-007 : 조세재정연구원발간물

개요

신청인은 영리적 목적(전자책 제작 및 출판)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간물에 대해 전자파일을 요청하여 제공받아 출판하던 중 제공중단결정을 받음

거부사유

해당 발간물의 경우 KOTRA의 국가정보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인데, KOTRA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를 확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KOTRA의 국가정보자료는 현재 교보문고와 독점 출판 계약이 설정되어 있어 교보문고의 출판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제공 중단 결정을 함

조정결과

조정부 회의 결과 피신청인이 KOTRA, 교보문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신청인에게 한 제공중단 결정을 철회하되, 향후 데이터 이용 시에는 출처, 발간년월 등의 표시하도록 이용조건을 부과함

➤ 출판업체의 무분별한 활용

- 국립산림과학원 -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자료의 유료판매에 대해 불만
 - 원본데이터를 요청하여 제공하였더니 출판사에서 인쇄하여 판매 중
- 문화재청 산하 국립고궁박물관
 - 공공누리마크 제4유형(출처표시/비상업적이용가능)을 부착하여 공개된 자료의 유료판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출판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인쇄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출판사항과 저자사항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아 도서관에 우리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구입해 달라는 사례가 있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홈페이지에 오픈되어있는 자료이나 저작권 등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출판사가 무단으로 출판하여 교보문고 등에 판매 중. 출판사에 판매금지 요청함

➤ 서체 개발업체의 이슈제기 대응

- 법무법인 등에서 서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받음
 - 맞춤형 컨설팅으로 내용증명 내용에 대한 해석 및 우리 기관의 대응방법 안내
 - 많은 기관들의 항의에 현재는 한글과컴퓨터에서 서체 개발업체에 대응하기로 함

➤ 외주용역자료의 저작권 미확보(2차적 저작물작성권 계약서에 미기재)

● 경북지방경찰청

- 대학산학협력단을 통하여 납품 받은 캐릭터를 활용하여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지않아 제작을 못함

● 대한적십자사

- 용역계약을 통하여 납품 받은 이미지,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교육자료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계약서 확인결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납품 받은 자료 그대로만 활용할 수 밖에 없음

➤ 유통 기관의 고민- 공공누리마크의 부착이 어려운 기관의 고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설기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작권 확보유무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건설기술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타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 확보에 대한 고민

● 대통령기록관

- 타 기관에서 보내준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을 모아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현재 저작권확보가 되지 않은 자료들도 같이 공개하여 서비스 중

감사합니다